

부산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가합8741 판결 [손해배상(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15. 1. 20 선고 2014나486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가합8741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A

피고1. B

2. C

3. D

변론종결 2014. 5. 29.

판결 선고 2014. 6. 26.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N

청구취지

1.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8.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95. 9. 15.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4. 24.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처 선정자 F, 아들 피고 B, 소외 G(2001년 8월경 사망), H,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딸 선정자 I, J, K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 L은 피고 B의 처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과 상속재산협의분할

(1) 망인은 양산시 M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들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N 임야 7,339㎡, O 답 641㎡, P 전 673㎡, Q 답 1,113㎡, R 답 2,632㎡ 등의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남겼다.

(2)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공동상속인 전원은 망인의 사망 이후 1989년경 사이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하면서, 장남인 피고 B가 망인의 상속재산인 토지를 소유하는 대신 이를 매각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대금을 분배하고 원고의 개인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협의분할 이후의 소유권이전

이 사건 협의분할 이후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0. 4. 24. 망인에서 피고 B

앞으로 1990. 4.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9. 7. 3. 망인에서 H 앞으로 1986. 4.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9. 7. 18. H에서 피고 B 앞으로 1989. 7.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4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9. 7. 3. 망인에서 G 앞으로 1986. 4.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9. 7. 18. G에서 피고 B 앞으로 1989. 7.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양산시 N 임야 7,339m²은 망인이 동생 S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1990. 4. 24. S에서 피고 B 앞으로 1990. 4.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O 답 641m²에 관하여는 1989. 7. 3. 망인에서 피고 B 앞으로 1986. 4.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공동상속인간 분쟁에 따른 합의

(1) 이 사건 협의분할 이후 공동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 G, H는 '피고 B가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 앞으로 마친 후 상속재산을 공정히 분배하겠다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거짓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5. 8. 16.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제3, 4부동산, 양산시 ○ 답 641m², R 답 2,632m², T 전 307m², P 전 721m²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95. 8. 11.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5가합1253).

(2) 위 처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1995년 9월경 공동상속인들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모인 자리에서 상속재산의 분배, 매각 후 현금지급, 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 등을 내용으로 한 합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이후 위 처분금지가처분이 해제되었다.

마. 이 사건 합의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은 U 등의 공동소유로 있었다가 전전 양도되어 1996. 3. 28. 피고 C 앞으로 1996. 3.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998. 10. 9. 제3, 4부동산 중 각 2/3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B에서 피고 C 앞으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B에서 피고 D 앞으로, 각 1998. 10.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B는 2009. 8. 19. V에게 위 양산시 N 임야 7,339m², O 답 641m²를 매도하고, 2009. 8. 20.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처분 토지'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공동상속인들에게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겠다는 등으로 상속재산의 분배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상속재산을 피고 B에게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협의분할에 이르렀으나, 피고 B가 대위변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1995. 9. 15.에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다.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처분 토지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처분 토지를 원고의 몫으로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하는 경우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의 공동 몫으로 남겨두었다가 선정자 F이 사망하면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협의하여 분배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처분 토지를 V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고 받은 매각대금 2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95. 9. 15.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3. 판단

가. 새로운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존재를 전제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토지의 매각대금을 구하고, 원고 등은 이 사건 합의를 근거로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바, 이를 선행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종전의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해제하고, 이 사건 처분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등의 공동소유로 하기로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함으로써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원고 등이 위 각 부동산을 상속개시시부터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합의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에서 망인의 상속재산 중 양산시 P 전 673㎡는 선정자 I, J, K이, Q 답 1,113㎡는 선정자 F이 각 가지기로 하고, R 답 2,632㎡, W 임야 9,898㎡는 피고 B가 매각하고, G는 X 답 1,795㎡, Y 전 221㎡ 및 위 매각대금 중 5,000만원을 가지고, H는 Z 답 714㎡, T 전 307㎡ 및 위 매각대금 중 5,000만 원을 가지기로 하고, 원고 등이 신청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10, 14,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종래의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해제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은 새로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등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1999. 6. 3. '자신이 살고 있는 제4 부동산은 피고 B의 소유인데, 자신이 현재 모친인 선정자 F을 모시고 있어 이를 피고 B에게 명도할 수 없고, 만약 선정자 F이 사망할 경우 그 해 내에 이를 명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무인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② 원고는 2004. 6. 20. '원고가 제2 부동산을 상업용으로 사용하되, 소유자인 피고 C이 위 부동산을 타에 매매하거나 사용을 원할 경우 원고는 이를 무조건 명도하고,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C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도 원고는 이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③ 이 사건 합의에 따라 G가 가지기로 한 X 답 1,795㎡, Y 전 221㎡, H가 가지기로 한 Z 답 714㎡, T 전 307㎡을 피고 B가 처분한 후에 그 매각대금을 G, H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나누어주었는데,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선정자 F이 가지기로 한 양산시 Q 답 1,113㎡, 선정자 I, J, K이 가지기로 한 P 전 673㎡에 관하여도 피고 B가 소유명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999년경 위 Q 답 1,113㎡를 타에 매도하고 받은 대금 일부를 선정자 F에게 교부하였고, 2004년경 P 전 673㎡를 타에 매도하고 받은 대금 일부를 선정자 I, J, K에게 교부하였다.

④ 상속재산협의분할에 해당하는 이 사건 협의분할 후 피고 B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비하여, 1995년 9월경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 등은 자신의 몫이라고 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며, 위 1995년 9월경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3년 5월경까지도 약 17년 8개월 동안 원고 등이 이 사건 처분 토지 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제2, 4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 B 또는 피고 C의 소유라는 사실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합의로써 종래의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해제하고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한 소급효를 가진 협의분할을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피고 B가 이 사건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되 상속재산의 교환가치에 주목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이나 자기채무의 대위변제 등을 통하여 상속재산의 분배와 같은 효과를 얻으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설령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를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청구가 아니라,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처분 토지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데, 피고 B가 타에 처분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선행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가 1995년 9월경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들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1995년 9월경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3. 5. 9.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원고가 위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B가 소유하는 부산 연제구 AA건물 제8층 제803호에 관하여 한 이 법원 2013카단20112호의

부동산가압류신청도 위 1995년 9월경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3. 4. 11.에 있었다),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반정모

판사이민지

판사최승훈

별지